

## 1. 주요내용

<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』개정에 따른 향후 예상 잠재 리스크 발생 항목 공유 (베리위즈 정대영 본부장) >

### □ 추진 경과

- (2019.9월) 배출권거래제 법률 개정(문진국 의원 발의)
  - 2020.3월 공포 완료. 2020.6.1 시행 예정
- (2020.4.10) : 동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 부처협의
- (2020.4.23) :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법예고(~5.7)

### □ 주요 내용

- (제12조) 무상할당
  - (법률) 무상할당 대상 업체 중 공익 목적의 기관에 대한 무상할당 근거 추가
  - (시행령) ①무역집약도 및 비용발생도 계산 수식은(별표1) 개정되지 않음, ②업종 기준은 1가지로 통합되었고 기준 수치가 0.003이상으로 낮아졌으나,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가 모두 영향을 미침
  - \* 개정안 기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석유화학업종은 무상할당대상 예상  $0.039 \times 0.660 = 0.026 > 0.003$
- (제13조)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
  - (법률) 기존 법률은 할당신청서에 관한 사항만 있었으나, 변경된 법률은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 확인 필요
  - (시행령) 제20조(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)\* 관련 환경부에서 단독 지침 공표가 예상되며 지침 공개에 따른 세부 내용 파악 필요
  - 기존 지침의 경우 시설단위로 증빙문서 및 작성항목이 복잡했으나 사업장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지침에 따른 할당신청서 양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(산정계획서의 구체적인 양식 및 내용 공표 예상)
  - \*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,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○ (제16조) 배출권 할당의 조정

- (법률) ①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생산품목의 변경에 의한 추가할당 삭제, ②기존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신증설시설에 대한 배출량 증가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, 개정된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로 명시하여 기준이 되는 배출량이 중요(추가 할당 신청 자체에 대한 불가 조건으로 적용됨)
- (시행령) ①기존 시행령에는 별도 배출량 증가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개정안에는 할당량의 5% 이상으로 배출량 증가량을 명시함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신증설은 신청이 불가, ②시행령에서 별도의 신청 기준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별도의 신청기준은 없을 것으로 예상

**<추가할당 기준 의견(안)>**

**1案)** 제30조(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기준)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을 대상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을 말한다.

**2案)** 제30조(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기준)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과 감축량의 합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을 대상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 이상인 양을 말한다.

**3案)** 제30조(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기준)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법 제8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기준 100분의 5를 말한다.

**4案)** 제30조(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의 기준)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소규모 시설단위 보고기준인 100이산화탄소상당량톤(tCO<sub>2</sub>eq)를 말한다.

○ (제17조) 배출권 할당의 취소(사업장 할당량의 50% 이상 감소)

- (시행령) 시설별로 사유에 따라 비례 값으로 할당량을 취소, 시설단위의 취소는 지침에 별도 기준이 있었으나, 사업장 단위 취소는 별도 기준은 없을 것으로 예상

< 녹색금융 ISO표준화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의견수렴 (한국생산기술연구원  
최요한 박사) >

□ 녹색금융과 분류체계(Taxonomy)

- (녹색금융) 친환경적인 산업에 금융비용을 줄여 주는 등 금융조달 활성화  
를 지원하고, 친환경적이지 못한 산업에 금융비용을 가중하거나 금융  
조달을 어렵게(예, 탈석탄금융, 탈원전금융 등)하는 것을 골자로 함
- (분류체계) 녹색금융 방식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선  
정 시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기준

□ 제도 도입 동향

- (해외) EU금융감독국은(DG finance) '19년 ‘지속가능성장금융(Sustainable  
Growth Finance)’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EU 의회에 제출
- (국내) 금융위 등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진행 중

□ 국제표준화 현황과 시사점

- (현황) EU와 미국, 중국은 공동으로 녹색금융(Green Finance)을 국제표준  
화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표준 제정을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제안, 현재  
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진행

\* ISO14100 녹색금융, ISO14097 기후변화금융투자, ISO14034-1 녹색채권, ISO14034-2 녹색대출,  
ISO14034-3 분류체계(Taxonomy), ISO14034-4 검증

- (시사점) 국내 산업계의 경우 국제표준이 확정 시 향후 국내·외 관련  
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비용 증가 및 금융조달의 난항 예상

- 국내 금융계의 경우 관련 국제 금융 체계 변화에 맞춰 국내 대응제도 또  
는 상품 도입에 대한 검토 및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 필요

- (대응방향) 국내 산업계의 경우 우리나라 상황에 유리한 녹색산업 분류  
체계를 국제표준안에 반영시킬 필요

- 국내 금융계의 경우 선진국의 녹색금융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, 국제표준화  
되는 녹색금융체계의 도입이 국내 금융계나 산업계 자금 조달 과정에 미칠  
영향 검토하고, 우리 금융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